

2019년도 제5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구 매 팀 장)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가공용 감굴 원과 운송용역』 계약방법 심의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9-05호 심의건을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 류 관 리 팀 장	<<제2019-05호 부의안건 설명 >>
위 원 장	물류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예정금액은 예산인가요?
물 류 관 리 팀 장	예산은 여기 금액보다는 조금 더 책정되어있고 예정금액은 이사업에 대해 책정된 금액입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예정금액이 예정단가 곱하기 예정수량인가요?
물 류 관 리 팀 장	네 그렇습니다.
◎ ◎ ◎ 위 원	낙찰자 결정방법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인데요. 지방계약법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없어서 적용한 건가요?
구 매 팀 장	네 행정안전부에는 없어서 적용했습니다.
◎ ◎ ◎ 위 원	주요골자의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정단가가 아니고 기초금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예정금액도 추정가격이라고 수정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 매 팀 장	공고나갈때는 공고문에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기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 ◎ 위 원	입찰참가자격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으로 제한은 안하나요?
물 류 관 리 팀 장	적격심사에서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제한은 하지않았습니다.
◎ ◎ ◎ 위 원	참가 가능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발언자	발언내용
물 류 관 리 팀 장	3년 전 입찰 시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 ◎ ◎ 위 원	전국입찰한건가요?
물 류 관 리 팀 장	네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금액이라서 전국입찰 진행했습니다.
◎ ◎ ◎ 위 원	제주도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는 용역인가요?
물 류 관 리 팀 장	아닙니다. 농협이나 감협, 선과장에서 우리공사 감귤공장으로 운송하는 용역입니다.
◎ ◎ ◎ 위 원	제주도에 있는 화물업체가 운송하겠네요.
물 류 관 리 팀 장	지금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제주도내 업체도 참여했었는데 낙찰하한을 미달로 떨어졌었습니다.
위 원 장	<p>실제로 제주도내 차량이 운송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p> <p>이 용역은 사실 매년 진행하는 운송용역입니다. 올해는 그전과 다르게 25톤 트럭으로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상승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생각입니다.</p>
△ △ △ 위 원	과업지시서 5 다항에 계약기간이 도래하거나 또는 계약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총 예상 운송 량이 소화될 경우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물류관리팀장	<p>계약종료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p> <p>첫 번째로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 총 물량이 9만 톤이 있는 게 9만 톤을 모두 수행했을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얘기입니다.</p>
◇ ◇ ◇ 위원	<p>용어들을 좀 봤는데요.</p> <p>5페이지에 계약기간이 도래하거나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만료하거나라고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의안 명을 운송용역이라고 했는데 운송계약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귤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운송계약이라고 하면 됩니다. 용역명, 용역기간이란 말도 계약이란말로 바꿔야 합니다.</p> <p>또한 일반적으로 수급업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수급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수급업체라고 수정해야할 것 같습니다.</p> <p>13페이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쓰신 것 같은데 공사의 이번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p>
▽ ▽ ▽ 위원	<p>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p> <p>참가자격을 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두 업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p> <p>근데 혹시 운송사업자이거나 운송주선사업자이거나 동일한 계약서로 진행하나요?</p> <p>운송사업자인 경우는 운송계약인데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다시 운송사업자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계약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와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p>
위원장	<p>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할 때 성질이 다른가요?</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 이 부분은 민법이 아니고 상법으로 분류됩니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운송주선사업자와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다시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그 범위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p> <p>이 건은 확정단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상법상에 주선했던 것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송주선사업자까지 입찰참가자격에 넣는 게 맞을지 우려됩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 운송용역으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 보수청구권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p>
◇ ◇ ◇ 위 원	<p>운송주선사업자가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화물자동차 10대 이상 보유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p>
구 매 팀 장	<p>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한하고, 주선사업자는 협력업체 사업수행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시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항으로 문제된 적도 없었습니다.</p>
◇ ◇ ◇ 위 원	<p>일단 협력업체를 체결해서 운송주선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 ▽ ▽ 위 원	<p>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상법상에 주선비에 대해서 보수청구권이 생길 수 있어서 보수청구권에 대한 비용도 금액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괜찮은데..이에 대한 인지여부가 문제가 된 판례도 있습니다.</p>
위 원 장	<p>실제로 이 운송업체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단순한 운송뿐만이 아니고 시장정보 등 지역동향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차계획 정보까지 나와야하는 것이지요. 운송뿐만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용역입니다.</p>
▽ ▽ ▽ 위 원	<p>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지만 혹시나 주선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원	<p>제 생각에는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p> <p>그런데 만약에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두 업자가 이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발주처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들어오면 자격에 관계없이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p> <p>그리고 입찰은 자격을 좁혀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자격이 된다면 넓혀야 합니다.</p>
◇ ◇ ◇ 위원	<p>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선사업자는 협력업체와 확약서를 맺고 낙찰자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선사업자와 협력업체의 관계는 공사에서는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p>
위원장	<p>사실 민간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는 별개로 보지 않고 실체는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운송사업자와는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만 주선사업자와는 주선사업자가 별개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p>
물류관리팀장	<p>법상으로 직접운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주선사업자인 경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주와 직접계약을 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주선사업자를 자격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참여기회를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삼다수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p>
위원장	<p>사실 이정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 면허를 보통 다 갖고 있긴 합니다.</p>
◇ ◇ ◇ 위원	<p>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p>오늘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정단가는 기초금액으로 예정금액은 추정가격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고요. 공고문에서는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고 부의안이라던가 제반서류에서도 용어의 일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안명에서 운송용역보다는 운송계약이 맞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역명, 용역기간도 계약명, 계약기간으로 변경하고요. 또한 과업지시서 5호 다항에서 계약기간이 도래하거나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로 바뀌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급체라는 말이 있는데 수급업체로 변경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가자격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보수청구권이라든지 부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6호의 업무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적어도 제주도내에서 감귤 원과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수행을 하는 업무라고 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p>
◇ ◇ ◇ 위원	<p>6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계약목적물의 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목적물이 아니고 계약목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p>
위원장	<p>이정도 사항을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의견 있으십니까?</p>
□ □ □ 위원	<p>한가지 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금액하고 부의안에 제시된 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p>
물류관리팀장	<p>이게 단가계약이다보니깐 25.0878...소수점이 무한대로 이어져있는데 2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산정하다보니깐 금액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약심사 담당관하고 유선통화를 했는데 발주기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p>
위원장	<p>그러니깐 소수점 열자리이상까지 갈수 없으니 둘째 자리까지 한 결과 금액의 차이가 약간 발생했다는 말씀이죠?</p>
물류관리팀장	<p>네 그렇습니다.</p>
위원장	<p>심사를 한 도의 담당관의 확인을 거친 사항이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7페이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보면 컨테이너 중고의 경우 쓰다가 하부가 파손되어서 가공공장의 기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컨테이너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반영해 줘으면 합니다.
위 원 장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나요?
물 류 관 리 팀 장	처음에 검사를 받습니다.
위 원 장	이 부분은 처음에 검사를 하고 있고, 물론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운영 중에 파손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기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리감독의 문제이지 계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 ◇ 위 원	4호에 보면 기 확보된 용기가 손망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이면 되지 않습니까?
물 류 관 리 팀 장	운영 중에 지게차 사용 중이라던가 사용 중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 △ 위 원	네 운영뿐만 아니라 초기에 불량이 없도록 검사검수를 강화해 주십시오.
물 류 관 리 팀 장	네 초기에 불량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 원 장	네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합니다. 다들 동의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05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가공용 감굴 원과 운송용역』 계약방법 심의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안건이 없으시면 제5회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